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1.6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 중복 기술된 관련 내용 삭제 및 조항 정비하고자 함.

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가기준 신설 (안 제13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 기간의 지급 제한기간을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19. ~ 8. 2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의 제목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과기준,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행 배제 기간(이하 “수행배제기간”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이하 “지급제한기간”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부과하는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수행배제기간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의3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8과”로 한다.

별표 5를 별표 8로 하고,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수행배제기간의 부과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수행배제기간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수행배제 부과기간
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나.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별표 6]

지급제한기간의 부과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

지급제한기간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지급제한 부과기간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년

[별표 7]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수행배제기간의 부과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수행배제기간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수행배제 부과기간
법 제31조의2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 수급 관여 계약업체등	1)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3) 징역형이나 금고형 없이 벌금형만 선고 받은 경우	2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u>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2. <u>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u> 3. <u>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u> 4. <u>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u>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 제> <삭 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생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신설>

<신설>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③ ----- 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

-----.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과기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행 배제 기간(이하 “수행배제기간”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기간(이하 “지급제한기간”이라

<신 설>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⑨ (생 략)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부과하는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수행배제기간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⑦ ----- 제6항-----

-----.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

----- 별표 8과 -----.

②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연 락 처	(044) 215 - 5375